

 <p><b>거창군</b> Geochang County</p> <p>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p>	<h1 style="font-size: 48px; margin: 0;">공 보</h1> <p style="font-size: 24px; margin: 0;">제962호 2024. 5. 1.(수)</p>	
---	--	---

선 결	기관의 장

##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24-64호 도로명주소 고시 ..... 2

## 공 고

거창군 공고 제2024-689호	「거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3
거창군 공고 제2024-690호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23
거창군 공고 제2024-696호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296, 3-263호선)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30
거창군 공고 제2024-698호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196호선)의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공고	34
거창군 공고 제2024-702호	2024년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공고	36

<b>회 램</b>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4. 5. 1.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대현길 370 등 4개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거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29일

거창군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2. 제정 이유

- 관내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신속한 화학사고 예방·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거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2조)
- 나.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4조~제13조)
- 다.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안 제14조)
- 라.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15조)
- 마. 사고 발생시 주민고지, 교육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17조~제19조)

4. 예고기간 : 2024. 4. 29.(월) ~ 5. 20.(월)

##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환경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 주소 : (우 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환경과)

- 전화 055) 940-3512, 팩스 055) 940-3759, 이메일 dlgkrrl0707@korea.kr

## 6.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환경과 수질관리담당 ☎(055)940-3512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정안 1부. 끝.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례명 : 거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 거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로 인한 거창군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시설·설비의 유지, 종업원의 교육, 기술개발 및 정보의 교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를 위한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거창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계획은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대책 및 대응계획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방안

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거창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④ 군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경상남도지사 및 관할 지역의 지방환경관서의 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 관계기관(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거창군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2. 제15조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변경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화학물질 관리업무 담당 국장, 화학물질 관리업무 담당 과장, 재난안전 관리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경찰서·소방서 화학물질 담당부서장

2. 거창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3. 화학·환경·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대표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5. 화학물질 관련 민간단체 대표 또는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6. 그 밖에 군수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과 관련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 ⑤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회의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명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화학물질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전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준수 의무)** ① 위원회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주요내용과 추진상황 등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대한 내용을 매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결과(이하 “화학물질 조사결과”라 한다) 중에서 군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및 중점관리물질에 관한 사항을 주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2. 화학물질 취급사실이 명백하면서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장이 화학물질 조사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다만, 법 제10조에 따

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또는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이 아닌 경우는 제외한다.

3. 법 제23조의3에 따라 주요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고지한 유해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및 화학사고 위험성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4.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15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① 군수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수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 등)** ① 군수가 법 제2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규칙 제19조의4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요청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사고 시 주요 대피장소가 변경된 경우
2. 화학사고 시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기 위하여 임시로 모이는 장소가 변경된 경우
3. 사고대응계획의 변경으로 주민소산계획의 변경 필요성이 큰 경우
4. 그 밖에 군수가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주민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군수는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를 요청 받은 경우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소산계획 보완 요청 및 제2항에 따른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의 검토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규칙 제19조의4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른다.

**제17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주민고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

1. 사고 발생 여부, 사고 접수시간 및 장소
2. 사고발생 시간, 사고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
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
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

②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즉시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③ 군수는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18조(교육·훈련 등)** 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지방고용노동관서·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재정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2. 환경·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련법령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2024. 2. 6.] [법률 제20231호, 2024. 2. 6.,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학물질”이란 원소·화합물 및 그에 인위적인 반응을 일으켜 얻어진 물질과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물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추출 또는 정제한 것을 말한다.
2. “유독물질”이란 유해성(有害性)이 있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3. “허가물질”이란 위해성(危害性)이 있다고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조, 수입, 사용하도록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4. “제한물질”이란 특정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그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5. “금지물질”이란 위해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모든 용도로의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을 금지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것을 말한다.
6. “사고대비물질”이란 화학물질 중에서 급성독성(急性毒性)·폭발성 등이 강하여 화학사고의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화학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피해 규모가 클 것으로 우려되는 화학물질로서 화학사고 대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39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화학물질을 말한다.
7. “유해화학물질”이란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8. “유해화학물질 영업”이란 유해화학물질 중 허가물질 및 금지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에 대한 영업을 말한다.
9. “유해성”이란 화학물질의 독성 등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좋지 아니한 영향을 미치는 화학물질 고유의 성질을 말한다.

- 10. “위해성”이란 유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이 노출되는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 11. “취급시설”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보관·저장, 운반(항공기·선박·철도를 이용한 운반은 제외한다) 또는 사용하는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 12. “취급”이란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판매, 보관·저장, 운반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 13. “화학사고”란 시설의 교체 등 작업 시 작업자의 과실, 시설 결함·노후화, 자연 재해, 운송사고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이 사람이나 환경에 유출·누출되어 발생하는 모든 상황을 말한다.

**제6조(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유해성·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7조에 따른 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 2.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
- 3. 화학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
- 4.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시행에 드는 재원조달 방안
- 5.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한 기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계획
- 6. 화학사고에 대비한 훈련·교육
- 7.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 8.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 방법
- 9.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환경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속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에서 취급하는 화학물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화학물질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시행

2.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운영
3.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4.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
5.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이행의 확인 및 지원
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정보체계 구축·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2년마다 화학물질의 취급과 관련된 취급현황, 취급시설 등에 관한 통계조사(이하 “화학물질 통계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의 조사·작성에 관하여는 「통계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화학물질과 관련된 현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화학물질 통계조사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화학물질 배출량조사)**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로부터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고 사업장으로 하여금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의 저감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현황 등의 조사(이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장에 출입하여 해당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하려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장 등에게 기관별 조사 결과와 필요한 자료

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출입·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 화학물질 배출량조사의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사업장별로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개할 경우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조사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 그 이용에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기업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일부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가 이 법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의 인적사항, 화학물질 취급량 및 취급시설의 정보, 법령 위반사실 등(이하 “화학물질 취급정보”이라 한다)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실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이 계류 중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또는 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비공개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 여부에 관한 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정보에 대한 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에 화학물질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둔다.

**제23조(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이하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연구실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학교

3. 화학사고 발생으로 사업장 주변 지역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

니하거나 유해화학물질 취급 형태·수량 등을 고려할 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필요성이 낮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시설

②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목록 및 유해성정보
2. 화학사고 발생으로 유해화학물질이 사업장 주변 지역으로 유출·누출될 경우 사람의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
3.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목록 및 방재시설과 장비의 보유현황
4.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공정안전정보, 공정위험성 분석자료, 공정안전절차, 운전책임자, 작업자 현황 및 유의사항에 관한 사항
5. 화학사고 대비 교육·훈련 및 자체점검 계획
6.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 및 가동중지에 대한 권한자 등 안전관리 담당조직
7. 화학사고 발생 시 유출·누출 시나리오 및 응급조치 계획
8. 화학사고 발생 시 영향 범위에 있는 주민, 공작물·농작물 및 환경매체 등의 확인
9.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의 소산계획
10. 화학사고 피해의 최소화·제거 및 복구 등을 위한 조치계획
11.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유해화학물질의 취급량 또는 취급시설 용량이 증가하거나 새로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2. 유해화학물질의 품목, 농도, 성상 또는 취급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3.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2항제9호에 따른 주민의 소산계획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로서 환경부장관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제출자에게 변경제출을 통지한 경우

④ 취급하는 유해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취급수량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이하 “주요취급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5년마다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

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변경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포함한다)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한 후 이를 제출한 자에게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위험도 및 적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해당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사업장 내에 비치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적합 여부를 결정할 때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사고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는 현장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이를 수정·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수정·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⑧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를 검토한 후 그 검토의견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⑨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내용·방법과 제출 시기·방법,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4(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
2.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적정한 계획 수립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할 지역의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거나 관할 소방관서의 장 등 화학사고 대응 관계 기관의 장이 화학사고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경우 필요한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를 제공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공의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23. 10. 4.] [환경부령 제1056호, 2023. 10. 4., 일부개정] 시행

**제19조의4(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 ① 법 제2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해야 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적합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 제23조의3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이하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23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고지해야 하는 자는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적합통보를 받은 해당 연도 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해야 한다.

1. 개별통지 방법: 우편이나 전자우편으로 통지
2. 개별설명 방법: 개별 설명 후 서명날인
3. 집합전달 방법: 공청회나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전달
4. 그 밖의 고지 방법: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반상회보·소식지 게재 등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③ 사업장이 서로 인접해 있는 등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제2항에 따른 고지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고지가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지역사회 고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화학물질안전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정보제공)**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제5항에 따른 허가일·변경허가일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신고 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허가증 사본 또는 신고증 사본을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28조제8항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를 1월 3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 관할 소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 등 화학사고 대응 기관에 제공해야 한다.

## □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시행 2022. 8. 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위험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 또는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 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화학안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화학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시행
2.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기능)** 도지사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경상남도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학안전계획의 수립·변경
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예방 및 비상훈련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경상남도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환경산림국장, 도민안전본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소방본부장이 된다.

1. 경상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
2. 화학·환경·보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4. 지방환경기관, 지방고용노동기관, 교육행정기관의 화학·환경·보건 관련 분야 담당공

무원

5. 그 밖에 도지사가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도지사는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① 도지사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위원회의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경우
4. 위원으로서의 직무태만이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4촌 이내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있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의결에 참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해서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각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화학물질 관리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화학물질 관리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2조(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비밀 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변경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도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화학물질 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도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경상남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16조(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경상남도 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고대응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사고대응계획의 적용범위
2. 화학사고에 대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
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장비 등의 동원 방법
5.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보호 및 대피에 관한 계획(대피장소의 지정요건 및 절차,

대피장소의 관리 및 점검, 대피장소의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6.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를 위한 조치·복구 계획 및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 의료지원계획

7.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유관기관의 장에게 통지하고, 소방본부장은 소방서에 시달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화학사고에 대비하여 화학사고 대응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7조(교육·훈련)** ① 도지사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담당하는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에게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기관·지방고용노동기관·소방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운영자

2. 환경·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 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4년 4월 30일

##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조례에 위임된 거창사랑상품권 발행에 따른 권면 금액 종류와 할인 범위를 현실화 하여 이용자의 편리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함.
3. 주요내용
  - 상품권 발행 권면금액 현실화(안 제3조 제2항)
    - 현 행 : (4종) 1천원, 2천원, 5천원, 1만원
    - 개 정 : (5종) 2천원, 5천원, 1만원, 5만원, 10만원

○ 상품권 판매 할인범위, 추가할인 근거 마련(안 제9조 제1항 제3호)

– 할인범위 한도 : 100분의 6 ⇒ 100분의 10

– 추가할인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일부 개정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 기간 : 2024. 4. 30. ~ 2024. 5. 21.

6. 의견제출

○ 이 조례의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1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 주 소 : (우50132) 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 경제기업과

– 전화번호 : 055)940-3682

– FAX : 055)940-3349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3. 관련법령 1부. 끝.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례명 :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종이형의 권면금액”을 “권면금액”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2,000원권
2. 5,000원권
3. 10,000원권
4. 50,000원권
5. 100,000원권

제6조제3항 중 “법 제7조제4항”을 “법 제7조제5항”으로 한다.

제7조 중 “같은 조 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100분의 6을 말한다. 다만 설 및 추석 등 연 4회 이내, 100분의 10 이내에서 할인 판매할 수 있다.”를 “상품권 권면금액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할인 등 할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3조(거창사랑상품권의 발행)</b>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거창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p> <p>②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거창사랑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하고, <u>종이형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 style="margin-left: 20px;">1. 1,000원권</p> <p style="margin-left: 20px;">2. 2,000원권</p> <p style="margin-left: 20px;">3. 5,000원권</p> <p style="margin-left: 20px;">4. 10,000원권</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u>&lt;신 설&gt;</u></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right: 20px;"><u>&lt;신 설&gt;</u></p> <p><b>제6조(가맹점의 등록)</b> ①(생략)</p> <p>②(생략)</p> <p>③ 법 <u>제7조제4항</u>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 style="margin-left: 20px;">1~2(생략)</p> <p><b>제7조(가맹점 등록의 취소)</b> 군수는 법 제8조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u>같은 조 제2항</u>에 따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p> <p><b>제9조(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사업 및 환수)</b> ① 군수는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통</p>	<p><b>제3조(거창사랑상품권의 발행)</b> ①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거창사랑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p> <p>②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거창사랑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하고, <u>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left: 20px;"><u>&lt;삭 제&gt;</u></p> <p style="margin-left: 20px;">1. 2,000원권</p> <p style="margin-left: 20px;">2. 5,000원권</p> <p style="margin-left: 20px;">3. 10,000원권</p> <p style="margin-left: 20px;">4. 50,000원권</p> <p style="margin-left: 20px;">5. 100,000원권</p> <p><b>제6조(가맹점의 등록)</b> ①(현행과 같음)</p> <p>②(현행과 같음)</p> <p>③ 법 <u>제7조제5항</u>에 따른 가맹점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 style="margin-left: 20px;">1~2(현행과 같음)</p> <p><b>제7조(가맹점 등록의 취소)</b> 군수는 법 제8조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u>같은 조 제3항</u>에 따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p> <p><b>제9조(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사업</b></p>

현행	개정안
<p>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민이나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거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li> <li>2. 거창사랑상품권 홍보</li> <li>3. 거창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이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u>100분의 6을 말한다. 다만 설 및 추석 등 연 4회 이내, 100분의 10 이내에서 할인 판매할 수 있다.</u></li> <li>4. 그 밖에 군수가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li> </ol> <p>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른 할인을 받았을 경우 법 제11조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할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p>	<p>및 환수) ① 군수는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민이나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거창사랑상품권으로 지급</li> <li>2. 거창사랑상품권 홍보</li> <li>3. 거창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이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u>권면금액의 100분의 10을 말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 할인 등 할인을 달리 정할 수 있다.</u></li> <li>4. 그 밖에 군수가 거창사랑상품권의 유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li> </ol> <p>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따른 할인을 받았을 경우 법 제11조에 따른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할인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p>

## 관련 법령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4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④ 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권면금액, 기재사항 등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제15조(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 「거창군 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 제3조(거창사랑상품권의 발행)

②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4항에 따라 거창사랑상품권의 종류는 종이형, 카드형(전자적 방식의 발행을 포함한다) 및 모바일로 하고, 종이형의 권면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000원권(호신설 2020.12.30.)
2. 2,000원권(호신설 2020.12.30.)
3. 5,000원권(호이동 2020.12.30.)
4. 10,000원권(호이동 2020.12.30.)

#### 제9조(거창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사업 및 환수)

3. 거창사랑상품권 할인 판매. 이 경우 법 제15조제2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을 말한다. 다만 설 및 추석 등 연 4회 이내, 100분의 10 이내에서 할인 판매할 수 있다.

##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296, 3-263호선)사업

###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열람공고

거창군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296, 3-263호선)사업 시행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건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5월 1일

## 거창군수

### 1. 거창군관리계획(교통시설:도로)사업시행 개요

구분	위 치		시행규모					시행구간	최 초 결정일	사업기간	비고
	읍	리	구분	류별	번호	연장 (m)	폭 (m)				
교통시설 :도로	거창	가지	소로	2	296	120	9.0	소로2-294 ~ 거창읍 가지리 1719-13	거창군 고시 제2022-58호 ('22.05.18.)	실시계획인가일 ~ 2024.12.31	
	거창	가지	소로	3	263	41	9.0	소로2-296 ~ 거창읍 가지리 318-6	경상남도 고시 제1978-103호 ('78.03.20.)	실시계획인가일 ~ 2024.12.31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가. 종 류 : 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사업
- 나. 명 칭 : 군계획시설(소로 2-296호선, 소로 3-263호선) 정비사업

### 3.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무궁화신탕
- 나. 주 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포스코 P&S타워)

### 4. 열람기간 : 신문게재 익일로부터 14일간

### 5. 열람장소 : 거창군청 도시건축과(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055-940-3584)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별첨

7. 의견제출 및 열람

사업시행에 관한 세부내용 및 관계서류는 위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보이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서(서식)

○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

○ 성 명 :

○ 연락처 :

○ 기타 참고사항

-

[별첨]

□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 군계획시설(소로 2-296호선)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1	거창읍 가지리	353-5	학	2	2	학교법인 거*** ****	-				
2	거창읍 가지리	356-18	전	3	3	주식회사 무****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3	거창읍 가지리	356-19	전	81	81	주식회사 무****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4	거창읍 가지리	353-6	학	24	24	학교법인 거*** ****	-				
5	거창읍 가지리	353-7	학	13	13	학교법인 거*** ****	-				
6	거창읍 가지리	산94-9	임	732	732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7	거창읍 가지리	339-5	학	19	19	학교법인 덕***	-				
8	거창읍 가지리	339-6	학	57	57	학교법인 덕***	-				
9	거창읍 가지리	353-8	학	117	117	주식회사 무****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역삼동, 포스코피엔에스타워)				
10	거창읍 가지리	339-7	학	3	3	학교법인 덕***	-				
11	거창읍 가지리	1719-13	도	31	31	국 (국토교통부)	국				
12	거창읍 가지리	347-8	학	2	1	주식회사 금***	경남 거창군 거창읍 아림로 23, 504(아진캐슬상가)				
합 계				1,084	1,083						

○ **군계획시설(소로3-263호선)**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대장면적 (㎡)	편입면적 (㎡)	소 유 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성 명	주 소	성 명	주 소	권리내용	
1	거창읍 가지리	347-8	학	2	1	주식회사 금***	경남 거창군 거창읍 아림로 23, 504(아진캐슬상가)				
2	거창읍 가지리	347-9	도	44	44	주식회사 금***	경남 거창군 거창읍 아림로 23, 504(아진캐슬상가)				
3	거창읍 가지리	346-4	학	2	2	주식회사 금***	경남 거창군 거창읍 아림로 23, 504(아진캐슬상가)				
4	거창읍 가지리	341-2	도	53	51	백**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죽전5길 52-16				
5	거창읍 가지리	341-7	대	116	116	학교법인 거*** ****	거창읍 가지리 353-1				
6	거창읍 가지리	318-6	도	1,208	77	거창군	공				
7	거창읍 가지리	1719-14	도	264	74	국 (국토교통부)	국				
8	거창읍 가지리	339-2	학	173	6	학교법인 덕***	-				
합 계				1,862	371						

#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소로2-196호선) 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고

도시계획시설(교통시설 : 소로2-196호선)의 사업 시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24. 5. 1.

## 거창군수

### 1. 사업시행 개요

종류	명칭	위치		시행규모						시행구간	최초결정일	사업기간
		읍·면	리	구분	류별	번호	연장(m)	폭(m)	면적(m <sup>2</sup> )			
도시계획시설	가조 수월리 도시계획도로	가조	마상	소로	2	196	95.0	8.0	783.0	마상리 189-6	경고103호 (95.05.12.)	2024. ~ 2024..

2. 사업 시행자 : 거창군수(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번지)

3. 사업 설계도 : 기재 생략

4. 열람 기간 : 신문 게재 익일로부터 15일간

5.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의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면적 (㎡)	편입 면적 (㎡)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비고
						주소	성명	권리명	권리자	
합계	-	-	-	3,186	783					
1	가조면 마상리	189-6	도	763	45	-	거창군	-	-	-
2	가조면 마상리	188-6	대	12	12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 면 마상리 189-1	장사준	-	-	사망말소자
3	가조면 마상리	188-2	과	59	59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 면 마상리 189-1	장사준	-	-	사망말소자
4	가조면 마상리	188-3	대	132	132	경상남도 거창군 가조 면 마상리 189-1	장사준	-	-	사망말소자
5	가조면 마상리	187-2	과	238	238	-	거창군	-	-	-
6	가조면 마상리	172-3	전	212	212	-	거창군	-	-	-
7	가조면 마상리	171-5	전	68	68	-	거창군	-	-	-
8	가조면 마상리	169-1	도	1,702	17	-	거창군	-	-	-

6.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없음

7. 의견제출 및 열람 : 위 공람 기간 내 다음 항목에 대하여 기술한 의견을 거창군수 (참조 : 도시건축과장)에게 서면(경남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103, 거창군청 도시건축과), 전화(055-940-3596), FAX(055-940-3579), E-mail(kstar753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실시계획(안)에 대한 의견 및 그 사유 :</li> <li>○ 성 명 :</li> <li>○ 연락처 :</li> <li>○ 기타 참고사항 :</li> </ul>
--

"끝".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지방세기본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7조의 규정에 따라 12월 말 결산법인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건설·제조·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합니다.

2024. 4. 30.

### 거창군수

#### ○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구분	세정 지원 대상
건설·제조 중소기업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건설·제조업 영위 중소기업 ① 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이상 & '23년 매출이 30% 이상 감소 ② 이자비용 비율이 업종평균 미만 & '23년 매출이 50% 이상 감소
수출 중소기업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하고 중소기업 유예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 - 관세청이 선정하여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우수 중소기업 - 한국무역협회 선정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수출의탑 수상기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선정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 직권 연장 대상은 법인세 납부기한 직권연장을 받은 중소기업

○ 연장기간 : 3개월

○ 연장된 납부기한 : 2024. 7. 31.(수)까지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공고문과 관련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분은 거창군청 재무과(☎055-940-32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